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84 2019년 6월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박상구 의원 의원(찬성자 12명)

나. 발의일자 : 2019년 5월 24일

다. 회부일자 : 2019년 5월 30일

라. 상정결과 :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년 6월 17일, 상정·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박상구 의원)

가. 제안이유

○ 언어는 인식과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 바, 시정의 핵심 가치는 시민 중심이 되어야 함. 따라서 "공급자"에 해당하는 서울시가 아니라 "수요자"인 시민 중심의 언어를 사용해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문서와 누리집 등, 시의 행정용어에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공문서 등의 언어사용에서 수요자인 시민 입장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행정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국어 사용 조례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도록 잘못

된 문장과 어문규범 및 상위법과 다른 내용을 수정함.

나. 주요내용

-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은 원칙적으로 시민 중심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2항제4호 신설).
-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과 어문규범 및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항을 수정함(안 제2조제3호~제4호, 제3조, 제4조, 제8조의2제1호, 제13조제1항 단서, 제2항제1호,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3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3항).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국어기본법」

○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가. 개정안 개요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의 원칙으로 공급자 가 아닌 시민 입장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시민 중심의 행정 구현 및 시민의 행정 만족도 제고와 잘못된 문장과 어문규 범 및 상위 법과 다른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세부사항

- 공공언어는 공공기관으로서 가지는 신뢰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언어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시민들에게 정책 혹은 사업 등을 소 개하고 설명할 때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표 현을 사용하는 것은 공공기관과 시민 사이에 소통을 어렵게 하 는 요인이 되므로 공공언어에서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 게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서울시는 행정문서에 이해하기 쉬운 한글을 많이 사용하도록 하고, 한글전문가를 채용하여 행정문서를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도록 하자는 시장 요청사항('14.11.4.)과 조례 제16조(실태 조사 및 평가)에 근거하여 2015년부터 해마다 서울시 공공언어사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서울시 공공언어 사용 실태조사는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공문, 보도자료, 리플릿, 안내판, 포스터, 소책자, 서울시청 홈페이지, 웹진 등 공공언어로서의 정확성, 간결한 문장 구성, 맞춤법과 외래어표기법 등의 어문규정을 준수하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서울시 국어 정책관련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서울시 전반에 거쳐 올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또한 '서울시 공공언어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 하고,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한글표기 위반업체에 과태료 부과를 권고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하는 등 공공언어 개선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으나 여전히 시민들의 체감도가 낮고 조사 대상도 광범위하여 단기간에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연차별로 면밀한 계획아래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임.

- 동 조례에서 사용되는 일부 단어와 문구를 상위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은 어려운 법률용어를 순화하고 명확하게 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사료됨.
- 다만, 서울시 산하기관(붙임1) 중 기관형태를 투자기관과 출연 기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제49조1)와 제76 조2)에 따라 설립된 공사와 공단은 법률용어상 "지방공기업"이나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정의)에 따르 면 '투자기관이라 함은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공단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출자 기관은 시의 자본금 출자비율이 10% 이상인 ㈜서울관광마케팅이 해당되나 청산('19년 7월)을 앞두 고 있으므로 안 제2조의제4호와 안 제17조제1항 중 "투자 · 출자 · 출연기관"을 현행대로 "투자 · 출연기관"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의제4호 및 안 제17조제1항 수정의견>

¹⁾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²⁾ 제76조(설립·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투자 · 출연기관	투자 · 출자 · 출연기관	투자 · 출연기관

○ 안 제8조의2 중 "임기만료 전"을 "임기가 끝나기 전"으로, 안 제17조제1항의 "부서 장"을 "부서장"으로 추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그 외 수정의견>

조례 조항	현행 및 개정안	수정의견
안 제8조의2	임기만료 전	임기가 끝나기 전
안 제17조제1항	부서 장	부서장

○ 서울시는 공문서 등 공공언어 사용에 있어 올바른 한글 사용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혼돈을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언어 사용을 오·남용하지 않 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바, 관련 실태조사 결과들이 실질적으로 공문서 에 수정,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붙임 1. 서울시 산하기관 목록>

연번	기관형태	재단명
1	투자기관	서울교통공사
2		서울시설공단
3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4	(57州)	서울주택도시공사
5		서울에너지공사
6	출연기관 (18개)	서울의료원
7		서울연구원
8		서울산업진흥원
9		서울신용보증재단
10		세종문화회관
11		서울여성가족재단
12		서울시복지재단
13		서울문화재단
14		서울시립교향악단
15		서울디자인재단
16		서울장학재단
17		평생교육진흥원
18		서울관광재단
19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		서울디지털재단
21		120다산콜센터
22		공공보건의료재단
23		서울기술연구원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 5. 토론요지 : 없음.
-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 8. 수정안의 요지

동 조례에서 잘못된 문장과 어문규범, 상위법과 다른 내용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사료되며, 현재 서울시에는 출자기관이 없으므로 개정하고자 하는 '투자·출자·출연'을 '투자·출연기관'으로 현행대로 수정하고 그 외「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하는 것임.

-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관련 번호 684

제안연월일 : 2019년 6월 17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수정이유

○ 동 조례에서 잘못된 문장과 어문규범, 상위법과 다른 내용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사료되며, 현재 서울시에는 출자기관이 없으므로 개정하고자 하는 '투자·출자·출연'을 '투자·출연기관'으로 현행대로 수정하고 그 외「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시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삽입함(안 제5조제5항).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4호 중 "투자·출자·출연기관"을 "투자·출연기관"으로 하고,

안 제8조의2 중 "임기만료 전"을 "임기가 끝나기 전"으로 하며,

안 제17조제1항 중 "부서 장"을 "부서장"으로 "투자·출자·출연기관"을 "투자·출연기관"으로 한다.

〈 수정안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다.		
1. ~ 3. (생략)	1. ~ 3. (생략)	1. ~ 3. (생략)
4.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이	4	4
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u>투자 · 출연기관을</u> 말한	<u>투자 · 출자 ·</u>	<u>투자 · 출연기관</u>
다.	<u>출연기관</u>	
5. (생략)	5. (생략)	5. (생략)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
<u>임기만료 전</u> 이라도 해당 위원	<u>임기만료 전</u> 이라도 해당 위원	<u>- 12/2] </u>
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제1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제1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시 본청 홍	임무) ① 시장은 시 본청 홍	임무) ①
보 담당 <u>부서 장</u> 또는 이에	보 담당 <u>부서 장</u> 또는 이에	<u>부서장</u>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직속기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직속기	
관, 사업소, <u>투자 · 출연기관</u>	관, 사업소, <u>투자 · 출자 · 출</u>	<u>투자 · 출연기관</u>
	<u>연기관</u> 에는 홍보 담당 부서장	
이에 준하는 직위의 직원을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직	
분임국어책임관으로 둔다.	원을 분임국어책임관으로 둔	
	다.	,